

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5. 10. 5 규칙 제485호
개정 2008. 6. 13 규칙 제561호
일부개정 2016. 3. 11 규칙 제836호
일부개정 2018. 4. 12 규칙 제912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9. 9. 20 규칙 제97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3. 11, 2018. 4. 12>

제2조 삭제 <2018. 4. 12>

제3조(수종선정) 「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제1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. <개정 2016. 3. 11, 2018. 4. 12>

1. 보도폭,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적합한 수종
2. 관리청이 당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

제4조(식재 가로수의 크기)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,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11, 2018. 4. 12, 2019. 9. 20>

1. 나무 크기는 나무 높이 3.5미터 이상·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(근원 직경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을 말한다)으로 할 것. 다만, 수종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나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.
2.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의 보식은 기준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할 것

제5조(식재 가로수의 종류) 관리청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>

제6조(식재방법)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.

②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,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>

제7조(가지치기 기준)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, 2019. 9. 20>

1. 노선별,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할 것
2.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할 것
3.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하지 않을 것. 다만,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.
4. 고압선, 교통표지판, 신호등,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을 것

제8조 삭제 <2018. 4. 12>

제9조 삭제 <2018. 4. 12>

제10조 삭제 <2018. 4. 12>

제11조(가지치기 승인)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>

② 관리청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지치기 조건 적합 여부 및 신청 수량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·확인하여 승인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>

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>

제12조 삭제 <2018. 4. 12>

제13조 삭제 <2018. 4. 12>

제14조(공사구역 안의 가로수 보호)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 안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가로수 존치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>

[제목개정 2016. 3. 11]

제15조 삭제 <2018. 4. 12>

제16조(하자보수보증금) ① 조례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은 원상복구한 가로수 훼손자에 대하여 조례 별표 3 훼손자부담금·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의 도급공사설계비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,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6. 13, 2018. 4. 12, 2019. 9. 20>

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이식한 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>

제16조의2(가로수 이식 신청)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이식이 필요하여 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 이식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9. 20]

제17조(비상 재해시 조치) 관리청은 풍수해·설해 등의 재해로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11, 2019. 9. 20>

1.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·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,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할 것
2.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, 보험가입 등

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

제18조(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)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산화된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6. 3. 11, 2018. 4. 12>

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실적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6. 3. 11, 2018. 4. 12>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칙에 의한 가로수 이식과 관련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.

부칙 <2008. 6. 13 규칙 제56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3. 11 규칙 제83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4. 12 규칙 제91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9. 20 규칙 제97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삭제 <2018. 4. 12>

[별표 2] 삭제 <2018. 4. 12>

[별표 3] 삭제 <2018. 4. 12>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8. 4. 12>

가로수 이식 신청서				
신청인	성 명(명칭)		생년월일	
	주 소			
이식 내역	위 치	전(소재지)		
		후(소재지)		
	수 종		수 량	
가로수이식 사유				
작 업 방 법				
작 업 기 간		년 월 일부터 (일간) 년 월 일(까지)		
「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 신 청 인 (인)				
○○ 구청장 귀하				
구비서류 1. 위 치 도 1부. 2. 현황도면 1부. 3. 현황사진 4. 도로점용허가 사본 1 부.				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8. 4. 12>

가로수 가지치기 신청서						
신청인	성 명(명칭)			생년월일		
	주소(소재지)					
가지치기 내역		노선명	구 간	수 종	규 격	수 량
			시 점 종 점			
가지치기 사유						
작 업 방 법						
가지치기 유형						
작 업 기 간		년 월 일부터		(일간)		
		년 월 일까지				
<p>「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○ ○ 구청장 귀하</p>						
<p>구비서류 1. 위 치 도 2. 현황도면 3. 현황사진</p>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8. 4. 12>

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서						
신청인	성 명(명칭)			생년월일		
	주소(소재지)					
가지치기 내역		노선명	구 간	수 종	규 격	수 량
			시 점 중 점			
가지치기 사유						
작 업 방 법						
가지치기 유형 및 주의 사항						
작 업 기 간		년 월 일부터	(일간)		년 월 일까지	
승 인 조 건		※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과 그 밖의 승인조건 기재				
「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○ ○ 구청장 (인)						

[별지 제4호서식] 삭제 <2018. 4. 12>

[별지 제5호서식]

가로수 전산관리대장					
1. 대상지 현황					
1. 위 치					(사 진)
2. 도로 명		3. 블 러 크			
4. 도로차선		4. 주변토지이용			
6. 전기(화)선		7. 지표상황			
2. 수목 데이터					
8. 수 목 명					
9. 수 형		10. 수 령			
11. 수 고(m)		12. 흉고직경(cm)			
13. 수관폭(m)		14. 활 력 도			
3. 관리 데이터					
15. 등록번호		16. 등록일자		17. 관리등급	
18. 관리기관			19. 피해상황		
20. 관리현황	식 재 일				
	약제살포				
	전 정 일				
	시 비 일				
	기 타				
21. 관리방안					
최종작성일			작 성 자		

나. 가로수 증감사유별 내역

구분 수종별	전반기 수량	증 감		현존 수량	증 감 사 유 별 내 역														
		증	감		증 가					감 소									
					계	신규 조성	갱신	보식	기타	계	자연 고사	인위 피해	교통 사고	지장목 이 식	수종 갱신 이식	수종 갱신 제거	기상 피해	기타	
계																			

다. 가로수 조성 내역

구 분		식 재 거 리 (m)	수 종 별 (본)											예 산 (백만원)							
			계	은 행 나 무	버 즘 나 무	느 티 나 무	벗 나 무	단 풍 나 무	메 타 세 쿼	회 화 나 무	목 백 합	기타수종				계	구 비	시 비	국 비	기 타	비 고
												소 계	()	()	기 타						
합 계	합 계																				
	신규조성																				
	갱 신																				
	보 식																				
	기타()																				
시 도	소 계																				
	신규조성																				
	갱 신																				
	보 식																				
	기타()																				
구 도	소 계																				
	신규조성																				
	갱 신																				
	보 식																				
	기타()																				
기타도로	소 계																				
	신규조성																				
	갱 신																				
	보 식																				
	기타()																				